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국 민 안 전 교 육 진 흥 기 본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추진을 위해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지원대상 범위 확대(안 제10조)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지원대상 법인을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함

나.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지원대상 범위 확대(안 제18조)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지원대상 법인을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00.00. ~ 00.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제18조제3호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등) ① (생 략) 1. ~ 2. (생 략) 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u>법인</u> 4. (생 략) ② (생 략)	제10조(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u>설립된 비영리법인</u>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 (생 략) 1. ~ 2. (생 략) 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u>법인</u> 4. (생 략)	제18조(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u>설립된 비영리법인</u> 4.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연 락 처	(044) 205 - 4275